



헌법재판소, '제3자 시정권고 신청권한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언론보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87호) 제32조 제1항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3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모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취재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을 공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 신청을 했으나,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이 언론중재법에서 삭제된 사실을 알고,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한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언론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해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삭제했지만, 시정권고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3자가 언론사 등에 공정보도를 위한 시정요구나 참여의 기회를 봉쇄당하는 것이 아니며,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청원권을 행사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한 청원을 하거나,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의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언론의 보도에 대한 시정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언론보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시정권고가 아닌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으므로, 언론중재법 제32조 제1항이 피해자가 아닌 자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언론중재법은 2005년 제정 당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여론형성을 위하여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시정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로운 언론활동에 대한 위축효과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2월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전북 지역언론인 워크숍 개최



위원회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북 전주에 위치한 재즈어라운드호텔에서 전북 지역 언론인들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바람직한 인터넷신문의 역할과 언론조정·중재제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 지역의 10여 개 인터넷언론사 대표 및 소속 기자들이 참석했으며, 인터넷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분쟁의 원만한 해결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 상시 운영



5월 20일 위원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 뽕뽕어린이기자단 학생들이 모의조정을 시연하고 있다.

위원회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인턴십 프로그램을 학기 중에도 확대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월 한달 동안, 어린이 대상 매체인 뽕뽕뉴스의 뽕뽕어린이기자단을 비롯하여 서울 영란여자중학교 등 3개 중학교 60여 명의 학생들이 위원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위원회 인턴십 프로그램은 언론 자유와 인권권 침해, 언론조정중재제도에 대한 강의, 모의조정 실습, 위원회 심리실 견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및 8개 지역사무소(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남)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교육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2)397-3095.

위원동정
—
COMMISSIONERS

공공갈등 관리와 언론대응 과정 ADR연수 실시



위원회는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서울시 공무원 등 15명을 대상으로 '제2차 공무원 ADR 연수'를 실시했다.

제2차 공무원 ADR 연수 과정은 공공 갈등의 원만한 해결방안으로서 ADR의 개념 및 사례 연구,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지자체의 실제 언론조정사례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한 '공무 현장 속 갈등관리와 언론대응 과정' 교육으로 구성됐다. 또한 미디어와 언론홍보의 이해, SNS 활용방법 등 효율적인 정책 홍보를 위한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2015년 여름호 발간



『조정을 위한 설득과 수사』 2015년 여름호(6월 1일자, 통권 15호)가 발간됐다. 여름호에는 조정·중재를 성공으로 이끄는 '프레임링(framing)' 활용법, 한국 문화의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조정전략, 맹자에게 배우는 설득과 수사, 갈등 당사자간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는 조정기법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위원회 홈페이지(pac.or.kr)와 모바일웹(m.pac.or.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위원회 광주사무소 이전 및 강의실 신설

위원회 광주사무소가 5월 18일 광주 남구 대남대로에 위치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빌딩 A동에서 B동 5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또 강의실(7층)을 신설해 언론분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지역 언론인 교육과 초중고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번호는 이전과 같다. (062)676-0360~1.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제



지성우 위원(서울제7중재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5월 15일 서울 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공동 주최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에서 “잊혀질 권리 도입 시 법제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글로벌 방송 포맷 개발 워크숍’에서 강연



김명중 위원(광주중재부,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은 5월 11일 서울 콘텐츠코리아 랩 제1센터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포맷 개발 워크숍’에 참석하여 “2015년 한국의 TV포맷”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모델’ 세미나에서 발제



홍문기 위원(경기중재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은 5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주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모델’ 세미나에서 “통일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네팔지진피해돕기 성금 전달

위원회 임직원 일동은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 국민을 돕기 위해 5월 28일 성금 300만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

사무처 인사(6월 1일자)

〈전보〉 △경기사무소장 최명진